

2026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「콘텐츠 IP×융합상품 개발지원」공고 (3차)

충북 대표 자원과 콘텐츠IP를 연계한 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「콘텐츠 IP × 융합 상품 개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7. 22.

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(콘텐츠진흥본부)

1 사업목적

- 충북 대표 자원과 콘텐츠 IP를 연계한 지역특화 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충북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
- 지역 특화소재·산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IP활용범위를 확장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

2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「콘텐츠IP×융합상품 개발지원」3차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6. 7. 22.(수) ~ 8. 10.(월) 17:00 (e나라도움 접수)
- 사업기간(협약기간) : 협약체결일로부터(8월) ~ 2026. 11. 30.(월)
- 지원규모 : 3개 과제 내외 / 과제당 150백만원 내외

※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

- 지원내용 : 콘텐츠IP* 활용 충북 대표자원**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

※콘텐츠IP장르 : 영상, 캐릭터, 웹툰·만화, 음악, 실감콘텐츠, 게임,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

※충북 대표자원 예시 : 충북소재 브랜드기업(기관)보유 제품, 특산품, 특화공간, 스포츠, 맛집, 관광, 상점, 항공 등 콘텐츠IP 기반 상품개발

- 지원유형 : (지정과제) 청주공항 관련 (자유과제) 충북 대표자원
- 콘텐츠 IP 및 과제 방향성
 - 콘텐츠IP와 대표자원(소재·산업등)간 연계성, 기획의도 및 상품개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

- 단순 기념품 제작에 그쳐 차별성 및 확장성이 부족한 과제는 지양
- 신규상품 기획 없이 단순 이미지 적용, 리디자인 또는 반복 제작에 그치는 과제 지양
- 협약 일 기준 해당 IP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

3 신청자격

○ 지원대상: 콘텐츠 기업(충북 또는 역외기업)

[주관기업] (필수)

- 1)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※ 간이과세자 제외
- 2) 충북 내 본사 또는 지사
※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
- 3) <역외기업인 경우> 선정, **협약 후 2개월 이내 충북으로 이전할 것**을 약속한 기업
- 4) 콘텐츠 기업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협력기업과 사전 협의 후 참여의향서 제출 필수
- 5)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※ 부동산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지원 불가

○ 지원조건

- 총사업비(지원금+자부담)의 10%이상 기업부담금(현금 기준) 필수
- 일자리 창출: 신규인력 **1인 이상** 채용 의무(해당 사업의 100% 참여율)

- 1)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,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
- 2) 채용 기준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1인 이상 채용 의무
- 3)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
-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(서비스 개시, 유통) 가능한 과제 수행
-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저작권, 디자인) 등록 권장
- 우리원에서 시행되는 멘토링, 충북콘텐츠성과교류행사 의무참가 및 성실수행
- 대표 자원 협력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필수
- IP확장 및 유통 등 비즈니스 타깃이 명확 기획 개발 집중 지원
- 지원성과 사후관리: 협약 종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
※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, 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
-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,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

○ 참가기준

-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(주관 또는 참여)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 2개로 제한(단, 1억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)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(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)
-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,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
-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중복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(주관기업, 참여기업) 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**중복지원(협약체결 기준)**이 발견 될 경우 **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임**
-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, 정보 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
- 신청일 현재 콘텐츠 기업(주관 또는 참여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. 다만,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
-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해당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
-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,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

4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○ 절차개요

- 사업진행 절차(안)

공고	→	선정평가 (요건/서면·발표)	→	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(70%)	→	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(30%)	→	결과평가/정산
'26. 7. 22. ~ 8. 10.		'26. 8.		'26. 8월		'26. 10.		'26. 11~12.

- 선정절차

적정성(요건)검토	→	서면·발표평가 및 종합심의	→	수정사업계획서 제출	→	협약체결
접수기업 전체		적정성(요건) 검토 통과기업		선정기업		선정기업

○ 평가방법

- 요건검토: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
- 서면·발표평가: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,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
- 종합심의: 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(과제수, 예산조정)

○ 평가기준(안)

구분지표	세부지표	내용	배점
과제기획 경쟁력 (35점)	IP활용 및 기획력 (브랜드경쟁력)	사업 목적과 방향성 부합 여부(소재 연계 및 활용 적정성)	35
		기존IP의 완성도 및 확장 가능성	
		기획 상품의 브랜드성의 가치(공감하는 정도) 및 시장 경쟁력	
		성과 및 수익창출 가능성	
사업화 기대성과 (35점)	지역 연계 및 경제적 파급효과	제시한 목표(성과)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	35
		사업화 수익구조 및 상용화 등 발전가능성	
		지역산업 및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	
수행역량 (15점)	수행능력	책임자의 의지,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	15
		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	
사업비 (10점)	예산계획	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	10
ESG (5점)	일자리 창출(계량)	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	2
	재무건전성(계량)	기업 신용평가 * BBB-이상 : 3점/ BB+BB-: 2점 / B+~B-: 1점 / C~: 0점	3
합계			100

※ 상기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

5 지원금 지급

-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 - 1차 지원금: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% 지급
 - 2차 지원금: 중간평가 결과(예산집행 포함) 통과 후 2차 지원금 30% 지급

구분	중간평가 점수	2차 지원금 지급	비 고
계속지원	70점 이상	2차 지원금(30%) 지급	과제 지속 수행
지원중단	70점 미만	과제실패 및 탈락	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(사업중단 및 참여 제한)

6 신청서 접수기간

- 공고 및 접수기간: 2026. 7. 22.(수) ~ 8. 10.(월) 17:00 (e나라도움 접수)
 - ※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,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, **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**를 권장합니다.

○ 추진일정(안)

구 분	내 용
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	○ 2026. 7. 22.(수) ~ 8. 10.(월) 17:00 (e나라도움 접수)
적정성검토	○ 2026. 8. 10.(월) ~ 8. 11.(화) 예정
서면·발표평가 및 종합심의	○ 2026. 8. 18.(화) 예정 /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3층 * 적정성 검토 후 통과기업 통보 * PPT자료 미리 준비
수정계획서·협약체결	○ 2026. 8월 중

※ 평가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

○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(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)

- e나라도움 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(www.cbist.or.kr)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www.bojo.go.kr/ 1670-9595)

- 1) e나라도움 회원가입 (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)
- 2) 과제조회 : **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콘텐츠IPx 융합상품 개발지원사업(3차)**
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공모현황 검색 공모확인
- 3)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(준비),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
※ e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

○ 제출서류 : 한글 원본 및 PDF 모두 제출 (파일별 정리, 압축하여 1개 파일 업로드)

구분	구분	제출서류 (한글,PDF)	비고
필수	1	과제신청서 및 계획서	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20페이지 정도
	2	사업비 산출 내역서	2-1. 용역비 편성의 경우 위탁사업계획서 포함
	2-1	위탁사업계획서	
	3	수행기업 소개서	-
	4	정부지원 수혜실적	-
	5	협력기업 참여의향서	참여의향서 및 소개서 포함
	6	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	-
	7	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	대표, 책임자, 인건비 편성 인력 기준
	8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대표, 책임자, 인건비 편성 인력 기준, 자필서명 필수
	9	사업자부담금 약약서	신청서 하단 법인인감 날인
	10	사업자등록증 사본	기업소재지 및 등록일자 참가자격 확인용
	11	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
	12	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	-
	13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	-
	14	(해당 시)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	콘텐츠 IP 보유 지식재산권 관련 또는 기타 확인 가능 서류
	15	(해당 시) 공간활용 약약서, 유통판로 확보서, 등 기타 자료	-
	16	(해당 시) 역외기업 본사 이전 약약서	-
선택	-	(선택 제출)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,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등	

- ※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
- ※ 목록에 있는 서류를 **순서대로 빠짐없이 제출**해 주시기 바랍니다
- ※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: 예산편성 지침 참고
- ※ 한글, PDF모두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,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·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,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

8 기타사항

-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문화체육관광부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,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, 충북과학기술혁신원「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」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
※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「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」 및 관련지침을 준용함

- 선정 이후 협약서 ‘성과관리’ 조항에 의거,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
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,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

※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, 규정, 지침에 따름
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,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가 있는 경우, 날인(서명) 필요 서류에 날인(서명) 없이 제출했을 경우,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,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

-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-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(교부취소, 협약 해약 등)
-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
- ※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-5678(1번), 홈페이지 <https://bora.kocca.kr>
-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※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지원사업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기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,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거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증이 이루어짐
- 원활한 사업 이행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해 중간평가일 이전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집행/정산과정 교육 필수 이수 및 관련 이수증 제출(의무)
-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

-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
 -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충청북도,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또는 해당 시·군과 유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
 - 예산 편성 시,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
 - 예산은 사업계획서로 제출된 계획대로 사용해야 하며, 예산 사용계획의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로 제한
 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, 협약 시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)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 되오니 양지하기 바람
 -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등급 ‘지원중단’의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3년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지원 불가
 - 평가 최종선정결과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
 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9 문의처

- 사업문의: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운영팀
☎ 043-908-8223 / 908-8201 (E-mail: jyj626@cbist.or.kr)
- 홈페이지: www.cbist.or.kr / www.cbcon.co.kr / www.bojo.go.kr
- e나라도움 문의: e나라도움 상담센터(☎1670-9595)



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「콘텐츠IP×융합상품개발지원사업」 3차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.

- ☞ **국고보조금 예치** : 국고보조금은 '통합예약기관(한국재정정보원)'에 예치하여,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, 집행 전 집행 내역 등록
- ☞ **사업자부담금 집행** :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,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(세목별 비율 적용)
 - * **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**
- ☞ **사업비 계좌 관리** :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가능한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,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, 원금이 보장되며,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
 - * 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,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

[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]

-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
 - 제23조(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**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**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※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
- ※ 해당 세목 내 편성된 **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**

- * 예산산출내역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사업비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가예산 산출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